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5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안도걸·강준현·임호선

정태호 · 위성곤 · 정일영

정을호 · 정준호 · 김남근

서삼석 · 김성회 · 박희승

조인철 · 서영교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을 한정한다면, 현재의 구조적 양극화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그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예산성립 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해 정 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한편 현행법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세감면율이 일정 한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권고 규정이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경제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분별한 감세 조치 확대는 세입기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정부의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세감면 규모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으로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8조제1항 개정 및 제89조제1항제4호신설).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8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			
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			
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			
지하는 비율(이하"국세감면율"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u>노력</u>	<u>하여</u>		
<u>하여야</u> 한다.	<u>ot</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①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			
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			
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